



○ 9월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은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상승함.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 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은 감소하고 소매 판매액지수가 증가하여 전월과 동일함.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 구인구직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등은 감소하여 전월대비 0.7p 하락함.

◆ 2012년 3/4분기 생산과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9%, 1.7% 증가, 투자는 7.1% 감소

○ 2012년 3/4분기 생산은 건설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광공업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고, 소비는 내구재·비내구재에서 늘어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함.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기계류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하였음.

◆ 201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1% 상승(생활물가지수 1.6% 상승)

○ 201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2%대 시현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9월	1/4	2/4p	3/4p	9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7.4	3.8	1.5	0.4	0.7(0.8)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7.4	4.2	1.5	0.3	0.7(3.6)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7.7	3.3	1.5	0.4	0.9(3.6)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4.2	0.3	-1.3	-1.5	-1.1(1.4)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11.9	6.7	4.9	2.3	3.0(6.2)
	서비스업 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4.2	2.5	1.7	1.6	2.5(0.7)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9	2.0	1.0	1.7	2.5(1.5)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3.2	9.4	-0.4	-7.1	-8.2(6.2)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6	3.0	2.4	1.6	2.1(-0.1)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10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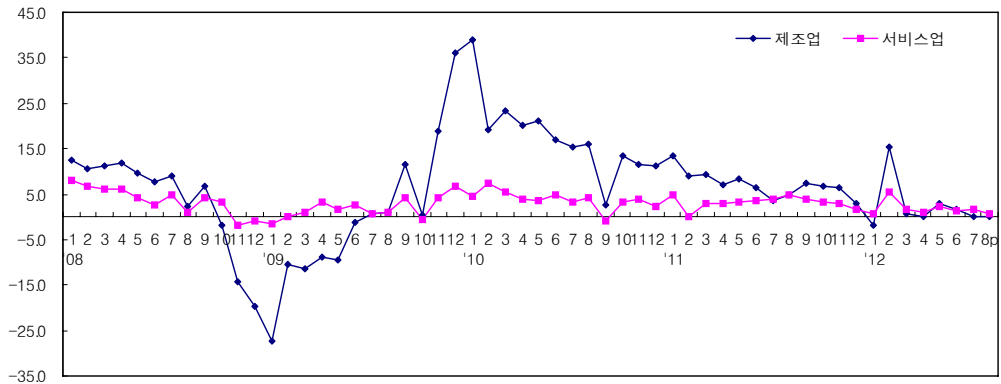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3.9%), 통신(-1.2%) 부문만 하락하였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0%), 의류 및 신발(5.0%), 주택·수도·전기·연료(3.9%), 교통(2.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1%), 교육(1.8%), 주류 및 담배(1.6%)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2년 10월 생활물가지수는 106.7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4%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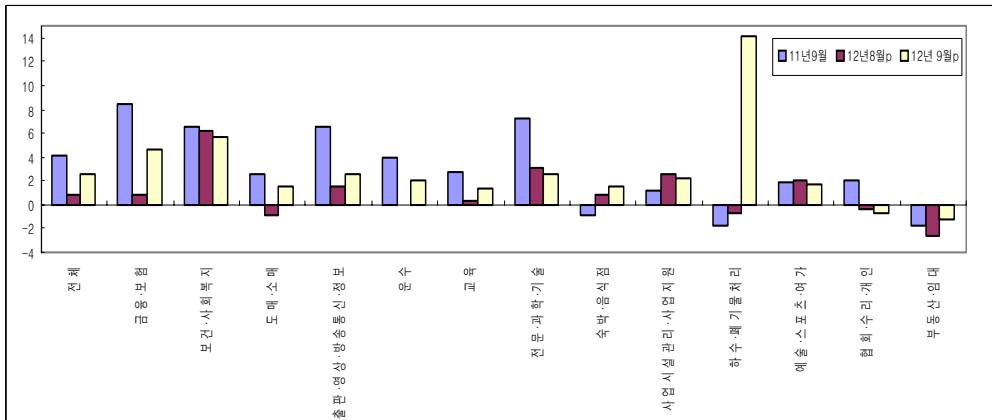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 10), 『2012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78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8천 명(1.5%)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027천 명으로 222천 명(1.5%)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60천 명으로 156천 명(1.5%) 증가함.
- 2012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7%)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50.4%)은 전년동월과 동일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10월 중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남성 고용률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 고용률은 49.1%로 전년동월과 동일함(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10월 중 취업자는 25,0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6천 명(1.6%)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6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4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0천 명(1.4%)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2년 10월 중 실업자는 7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 명(-2.4%)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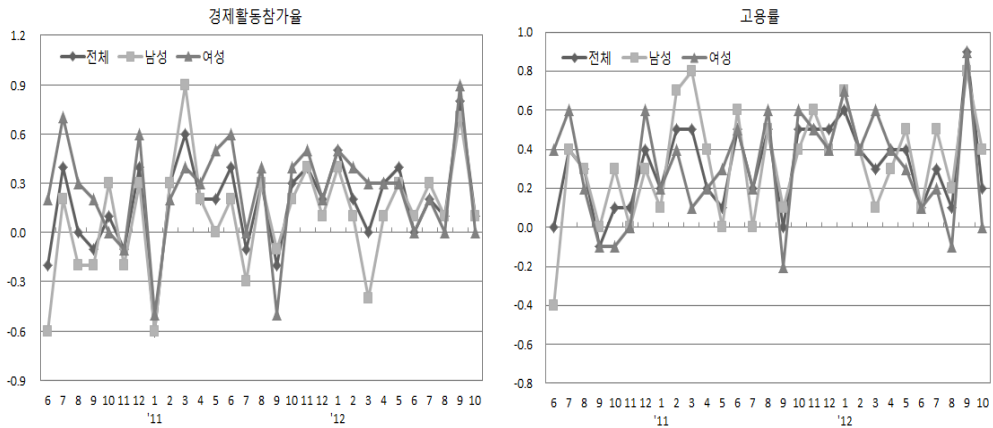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24,488 ( 1.3)	25,437 ( 1.6)	25,269 ( 1.1)	25,202 ( 1.6)	25,409 ( 1.6)	24,873 ( 1.6)	25,844 ( 1.6)	25,760 ( 1.9)	25,755 ( 2.7)
참가율	59.9	62.0	61.5	61.1	61.7	60.1	62.3	61.8	61.8	61.8
취업자	23,459 ( 1.8)	24,572 ( 1.7)	24,483 ( 1.5)	24,462 ( 2.0)	24,673 ( 2.1)	23,927 ( 2.0)	25,003 ( 1.8)	24,989 ( 2.1)	25,003 ( 2.8)	25,069 ( 1.6)
고용률	57.4	59.9	59.5	59.4	59.9	57.8	60.2	60.0	60.0	60.1
실업자	1,028	865	786	740	736	947	841	770	752	718
실업률	3.9	3.4	3.1	2.9	2.9	3.8	3.3	3.0	2.9	2.8
비경제활동인구	16,392 ( 0.8)	15,559 ( 0.4)	15,847 ( 1.2)	16,014 ( 0.3)	15,760 ( 0.3)	16,495 ( 0.6)	15,669 ( 0.7)	15,904 ( 0.4)	15,942 (-0.8)	15,943 ( 1.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2. 11), 『2012년 10월 고용동향』.

- 남성 실업자는 43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7.2%)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6.1%) 증가함.
- 실업률은 남성이 2.9%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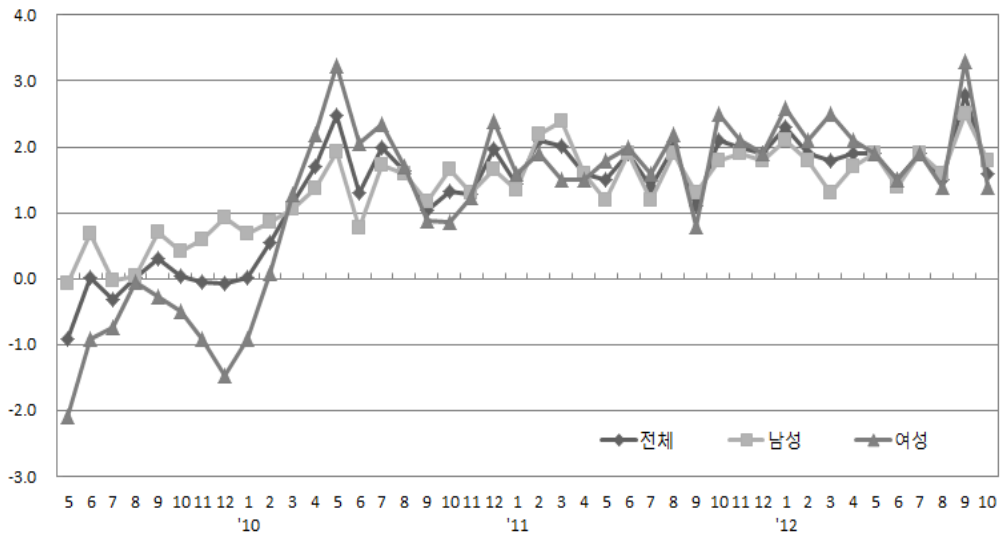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3천 명(1.2%)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4천 명(1.4%)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7.6%) 감소함.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403천 명으로 31천 명(0.7%)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2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6천 명, 2.3%),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78천명, 1.4%), 제조업(144천명, 3.6%)에서는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동일하였고, 농림어업(-19천 명, -1.1%)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산업	23,459 ( 1.8)	24,572 ( 1.7)	24,483 ( 1.5)	24,462 ( 2.0)	24,673 ( 2.1)	23,927 ( 2.0)	25,003 ( 1.8)	24,989 ( 2.1)	25,003 ( 2.8)	25,069 ( 1.6)
농림어업	1,207 (-2.3)	1,736 ( 0.2)	1,704 (-2.9)	1,521 (-1.5)	1,757 (-1.8)	1,176 (-2.6)	1,713 (-1.4)	1,706 ( 0.1)	1,711 ( 0.8)	1,738 (-1.1)
제조업	4,139 ( 5.8)	4,127 ( 2.8)	4,041 (-0.3)	4,056 (-1.8)	4,044 (-1.3)	4,037 (-2.5)	4,061 (-1.6)	4,126 ( 2.1)	4,153 ( 3.5)	4,188 ( 3.6)
건설업	1,641 (-0.2)	1,774 (-2.3)	1,755 (-2.0)	1,832 ( 4.0)	1,821 ( 2.3)	1,721 ( 4.8)	1,807 ( 1.9)	1,772 ( 0.9)	1,781 ( 3.4)	1,818 (-0.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71 (-1.1)	5,457 (-0.1)	5,496 ( 1.0)	5,542 ( 1.8)	5,513 ( 2.2)	5,571 ( 1.8)	5,596 ( 2.6)	5,610 ( 2.1)	5,585 ( 3.0)	5,592 (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097 ( 3.0)	8,529 ( 2.8)	8,473 ( 2.8)	8,486 ( 3.1)	8,521 ( 3.3)	8,398 ( 3.7)	8,820 ( 3.4)	8,772 ( 3.5)	8,768 ( 3.8)	8,718 ( 2.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80 ( 1.6)	2,933 ( 3.6)	3,001 ( 6.6)	3,011 ( 5.5)	3,000 ( 5.6)	3,011 ( 4.5)	2,991 ( 2.0)	2,990 (-0.4)	2,991 (-0.4)	3,000 ( 0.0)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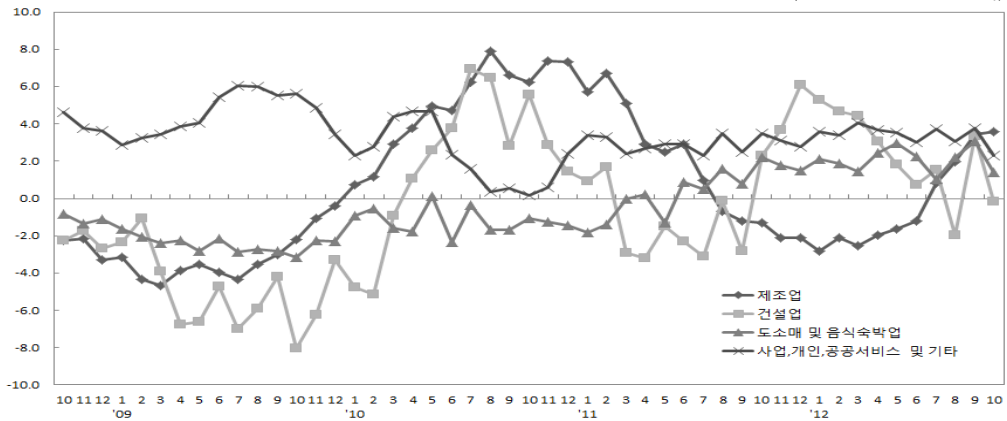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표준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2. 11), 『2012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 지속

○ 2012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111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6천 명(0.6%)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9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0천 명(2.0%)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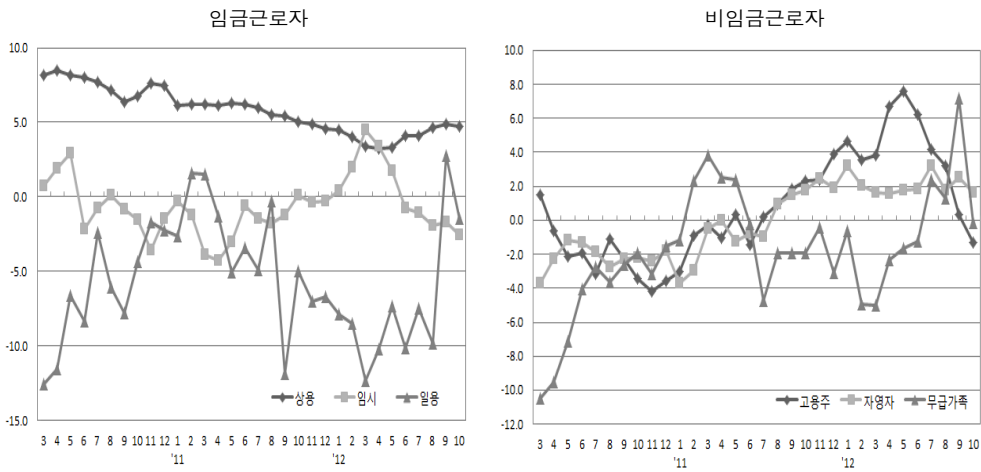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10월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0월
전 체	23,459 ( 1.8)	24,572 ( 1.7)	24,483 ( 1.5)	24,462 ( 2.0)	24,673 ( 2.1)	23,927 ( 2.0)	25,003 ( 1.8)	24,989 ( 2.1)	25,003 ( 2.8)	25,069 ( 1.6)
비임금근로자	6,542 (-1.5)	7,004 (-0.3)	6,965 (-0.4)	6,878 ( 1.5)	7,065 ( 1.0)	6,650 ( 1.6)	7,154 ( 2.1)	7,154 ( 2.7)	7,141 ( 2.9)	7,111 ( 0.6)
자영업주	5,399 (-2.1)	5,657 (-0.7)	5,680 ( 0.6)	5,639 ( 2.3)	5,731 ( 1.9)	5,548 ( 2.8)	5,830 ( 3.1)	5,823 ( 2.5)	5,803 ( 1.9)	5,779 ( 0.8)
무급가족종사자	1,143 ( 1.7)	1,348 ( 1.5)	1,285 (-4.7)	1,239 (-2.0)	1,334 (-2.6)	1,102 (-3.6)	1,324 (-1.8)	1,331 ( 3.6)	1,338 ( 7.2)	1,332 (-0.1)
임금근로자	16,917 ( 3.2)	17,568 ( 2.5)	17,518 ( 2.3)	17,585 ( 2.2)	17,608 ( 2.5)	17,277 ( 2.1)	17,849 ( 1.6)	17,836 ( 1.8)	17,862 ( 2.8)	17,958 ( 2.0)
상용근로자	10,413 ( 6.2)	10,681 ( 6.2)	10,731 ( 5.6)	10,820 ( 4.8)	10,796 ( 5.0)	10,825 ( 4.0)	11,059 ( 3.5)	11,216 ( 4.5)	11,291 ( 4.9)	11,302 ( 4.7)
임시근로자	4,804 (-1.8)	5,041 (-2.7)	5,072 (-1.5)	5,042 (-0.2)	5,094 ( 0.1)	4,914 ( 2.3)	5,114 ( 1.4)	4,992 (-1.6)	4,961 (-1.7)	4,964 (-2.5)
일용근로자	1,701 ( 0.1)	1,846 (-3.3)	1,716 (-5.7)	1,723 (-6.3)	1,718 (-5.0)	1,538 (-9.6)	1,675 (-9.3)	1,627 (-5.2)	1,610 ( 2.7)	1,692 (-1.5)
36시간 미만	3,246 (-33.1)	3,210 ( 0.4)	8,464 (154.2)	3,217 ( 4.1)	3,114 ( 8.5)	3,313 ( 2.1)	3,284 ( 2.3)	4,722 (-44.2)	3,327 (-78.8)	3,137 ( 0.7)
36시간 이상	19,739 (11.7)	21,067 ( 1.7)	15,419 (-24.3)	20,937 ( 1.5)	21,251 ( 1.1)	20,081 ( 1.7)	21,425 ( 1.7)	19,770 (28.2)	21,340 (165.1)	21,630 ( 1.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2. 11), 『2012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302천 명으로 505천 명(4.7%)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64천 명으로 130천 명(-2.5%)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1,692천 명으로 26천 명(-1.5%)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우측 참조).
  -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했으며,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함.
  - 2011년 7월 이래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이번 달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음.
- 2012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 명(0.7%)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630천 명으로 379천 명(1.8%) 증가함.
- 36시간 미만 취업자 3,137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3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8.2%)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모든 학력에서 실업률 감소**

- 2012년 10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6.9%, 0.2%p), 50대(1.9%, 0.1%p)에서는 증가하였고, 나머지에서는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대졸 이상(3.1%, 0.2%p)에서는 증가하였고, 나머지에서는 감소함.

○ 2012년 10월 중 전체 실업자 71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679천 명으로 20천 명 감소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월	10월			
전 체	1,028(4.2)	865(3.4)	786(3.1)	740(2.9)	736(2.9)	947(3.8)	841(3.3)	770(3.0)	752(2.9)	718(2.8)
15~29세	372(8.8)	332(7.9)	284(6.7)	292(7.1)	276(6.7)	346(8.2)	341(8.1)	283(6.8)	270(6.7)	276(6.9)
30~39세	237(4.0)	211(3.5)	189(3.2)	171(2.9)	174(2.9)	190(3.2)	188(3.2)	166(2.8)	161(2.7)	161(2.7)
40~49세	167(2.5)	145(2.1)	138(2.0)	131(1.9)	136(2.0)	164(2.4)	135(2.0)	133(2.0)	140(2.1)	123(1.8)
50~59세	133(2.7)	107(2.0)	108(2.1)	94(1.8)	96(1.8)	124(2.3)	112(2.0)	123(2.2)	124(2.2)	106(1.9)
60세 이상	119(4.5)	70(2.3)	67(2.1)	53(1.8)	54(1.7)	124(4.4)	66(2.0)	65(1.9)	57(1.7)	52(1.5)
중졸 이하	195(4.1)	112(2.1)	119(2.3)	108(2.1)	108(2.1)	187(4.0)	112(2.2)	106(2.1)	108(2.1)	92(1.8)
고졸	465(4.6)	408(4.0)	372(3.7)	349(3.5)	331(3.3)	408(4.1)	356(3.5)	350(3.4)	331(3.3)	304(3.0)
대졸 이상	369(3.8)	345(3.4)	296(2.9)	284(2.8)	297(2.9)	352(3.4)	373(3.5)	314(3.0)	313(3.0)	321(3.1)
취업무경험실업자	52	45	45	44	37	58	48	36	33	39
취업유경험실업자	977	820	741	696	699	889	793	734	719	679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2. 11), 『2012년 10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2년 8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0.5% 하락

○ 2012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7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93천 원) 0.5% 하락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해 2,468천 원을 기록함.
  - 반면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0% 하락하여 170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27.3% 하락하여 403천 원을 기록함.
  - 완성차 제조 및 관련 산업에서 특별급여인 상여금 지급일이 2011년 8월에서 2012년 9월로 변경되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2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특별급여의 감소영향으로 2011년 8월 대비 1.1% 하락한 3,040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한 1,29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8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42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799천 원)대비 5.1%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8월 누계 대비 5.0% 상승한 3,114천 원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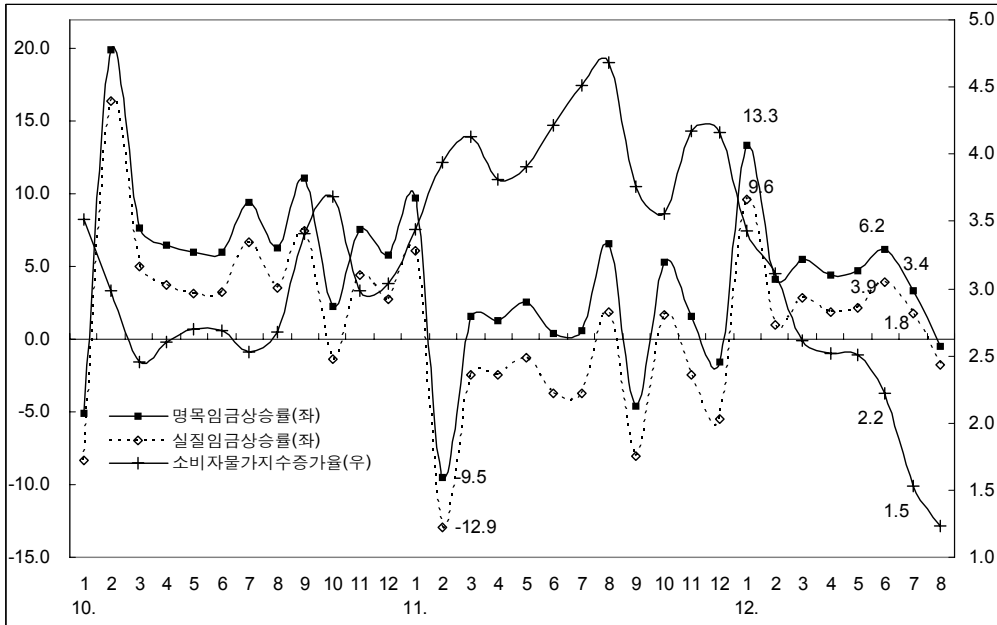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8월 누계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 2.6)	2,816 ( 6.8)	2,844 ( 1.0)	2,799 ( 1.5)	2,893 ( 6.6)	2,942 ( 5.1)	2,878 (-0.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 2.2)	3,047 ( 6.4)	3,019 (-0.9)	2,967 (-0.5)	3,073 ( 4.8)	3,114 ( 5.0)	3,040 (-1.1)
	정액급여	2,139 ( 4.0)	2,234 ( 4.5)	2,341 ( 4.8)	2,320 ( 4.5)	2,339 ( 4.9)	2,451 ( 5.7)	2,468 ( 5.5)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7 (-7.7)	180 (-7.4)	180 ( 1.9)	170 (-6.0)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70 (-17.4)	554 ( 8.8)	482 ( 2.5)	403 (-27.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 1.9)	1,056 (-1.6)	1,215 (15.1)	1,190 (12.0)	1,238 (17.4)	1,284 ( 7.9)	1,294 ( 4.5)
소비자물가지수		97.1 ( 2.8)	100.0 ( 2.9)	104.0 ( 4.0)	103.6 ( 4.1)	105.0 ( 4.7)	106.0 ( 2.4)	106.3 ( 1.2)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2.5	1.8	2.7	-1.7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1년 1~8월 누계 대비 5.7%, 초과급여는 1.9%, 특별급여는 2.5%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8월 누계 대비 7.9% 상승한 1,28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8월 실질임금은 1.7% 감소함.

- 2012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7%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2012년 1~8월 누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7%를 기록함.

◆ 2012년 8월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임금상승률 상승

○ 2012년 8월 기준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임금상승이 높음.

- 2012년 8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교육서비스업(6.0%), 부동산업 및 임대업(5.8%), 운수업(4.3%)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반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2%), 제조업(-2.4%), 도매 및 소매업(-1.3%) 등임.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2012년 1~8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2012년 1~8월 누계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9.8%), 운수업(8.5%), 숙박 및 음식점업(6.3%), 도매 및 소매업(6.1%)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8월
전 산업	2,816 ( 6.8)	2,844 ( 1.0)	2,799 ( 1.5)	2,893 ( 6.6)	2,942 ( 5.1)	2,878 (-0.5)
광업	3,000 ( 7.3)	3,309(10.3)	3,275 ( 9.1)	2,984 ( 0.4)	3,487 ( 6.5)	3,143 ( 5.3)
제조업	2,985 ( 9.1)	3,034 ( 1.6)	2,976 ( 3.2)	3,159(10.9)	3,146 ( 5.7)	3,084(-2.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 7.0)	5,482 ( 0.5)	5,016(-0.7)	4,171(-0.7)	5,003(-0.3)	4,224 ( 1.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 5.2)	2,488 ( 1.9)	2,429 ( 2.2)	2,599 ( 8.2)	2,570 ( 5.8)	2,623 ( 0.9)
건설업	1,944 ( 7.9)	2,181(12.2)	2,167(13.5)	2,152(14.7)	2,249 ( 3.8)	2,216 ( 3.0)
도매 및 소매업	2,769 ( 7.1)	2,942 ( 6.3)	2,859 ( 5.9)	3,013(14.4)	3,034 ( 6.1)	2,973(-1.3)
운수업	2,381 ( 5.4)	2,393 ( 0.5)	2,343 ( 0.0)	2,495(-5.3)	2,542 ( 8.5)	2,617 ( 4.9)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 5.0)	1,653(13.0)	1,624(12.9)	1,614(10.6)	1,726 ( 6.3)	1,699 ( 5.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 4.7)	3,692 ( 9.1)	3,654 ( 9.9)	3,522 ( 9.7)	3,816 ( 4.4)	3,655 ( 3.8)
금융 및 보험업	4,680 ( 4.7)	4,771 ( 1.9)	4,757 ( 1.7)	4,498 ( 8.5)	4,963 ( 4.3)	4,462(-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 4.3)	2,017 ( 2.6)	1,988 ( 1.3)	1,945 ( 5.8)	2,182 ( 9.8)	2,058 ( 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 6.9)	3,870(-2.2)	3,775(-2.8)	4,346 ( 8.9)	3,957 ( 4.8)	3,947(-9.2)
사업서비스업	1,848 ( 8.2)	1,700(-8.0)	1,674(-7.9)	1,785 ( 1.5)	1,756 ( 4.9)	1,776(-0.5)
교육서비스업	3,157 ( 1.4)	2,985(-5.4)	3,037(-5.3)	3,061(-5.2)	3,173 ( 4.5)	3,243 ( 6.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 2.4)	2,490(-4.0)	2,434(-4.6)	2,437(-2.8)	2,578 ( 5.9)	2,557 ( 4.9)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7 ( 0.9)	2,130 ( 1.1)	2,081 ( 1.7)	1,978 ( 3.9)	2,154 ( 3.5)	2,062 ( 4.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 4.0)	2,185 ( 3.9)	2,171 ( 4.6)	2,302(12.0)	2,196 ( 1.2)	2,184(-5.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7.2% 하락

- 2012년 8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하락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8월 기준 2,73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5.9%)의 상승에 기인함.
  - 반면 5~299인 규모의 초과급여(-2.9%)와 특별급여(-22.2%)는 감소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8월 상용임금총액은 4,172천 원으로 2011년 8월 대비 7.2% 하락하였으며, 이는 초과급여(-11.8%)와 특별급여(-30.7%) 하락의 영향임.
- 2012년 1~8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5.9%)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2.0%)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3.4%)와 특별급여(-1.4%)는 감소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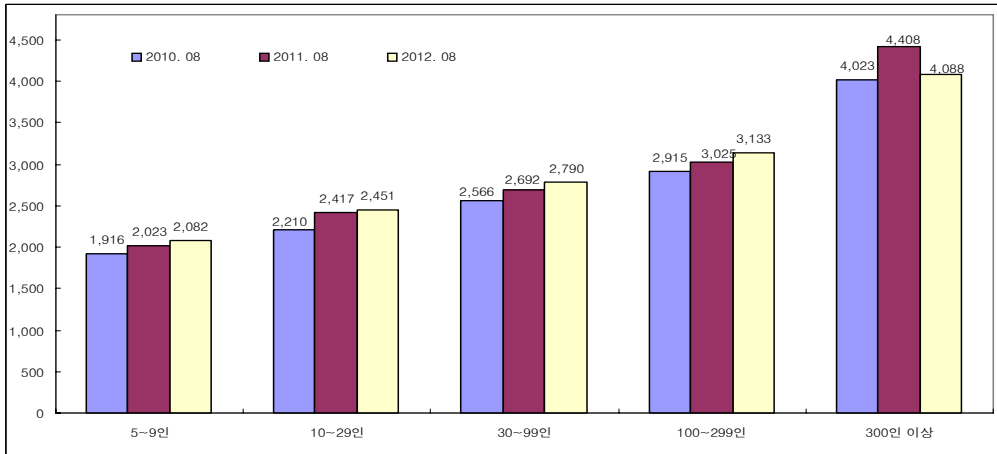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8월 누계		1~8월 누계	
				8월		8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 6.4)	3,019 ( -0.9)	2,967 ( -0.5)	3,073 ( 4.8)	3,114 ( 5.0)	3,040 ( -1.1)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320 ( 4.5)	2,339 ( 4.9)	2,451 ( 5.7)	2,468 ( 5.5)
	초과급여	196 (12.2)	179 ( -8.4)	177 ( -7.7)	180 ( -7.4)	180 ( 1.9)	170 ( -6.0)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470 (-17.4)	554 ( 8.8)	482 ( 2.5)	403 (-27.3)
	비상용임금총액	1,056 (-1.6)	1,215 ( 15.1)	1,190 ( 12.0)	1,238 ( 17.4)	1,284 ( 7.9)	1,294 ( 4.5)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 5.5)	2,675 ( -0.9)	2,632 ( -0.5)	2,679 ( 2.7)	2,786 ( 5.9)	2,732 ( 2.0)
	정액급여	2,082 ( 4.3)	2,204 ( 5.9)	2,184 ( 5.6)	2,204 ( 6.0)	2,318 ( 6.1)	2,333 ( 5.9)
	초과급여	176 (13.6)	150 (-14.5)	149 (-14.0)	154 (-11.8)	155 ( 4.1)	150 ( -2.9)
	특별급여	441 ( 8.4)	321 (-27.3)	299 (-25.8)	320 ( -9.3)	313 ( 4.8)	249 (-22.2)
	비상용임금총액	1,059 (-1.6)	1,216 ( 14.8)	1,187 ( 11.8)	1,222 ( 16.7)	1,289 ( 8.7)	1,284 ( 5.1)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 9.1)	4,273 ( -0.4)	4,219 ( 1.0)	4,496 ( 9.6)	4,303 ( 2.0)	4,172 ( -7.2)
	정액급여	2,779 ( 5.2)	2,842 ( 2.3)	2,826 ( 2.5)	2,824 ( 2.0)	2,935 ( 3.9)	2,962 ( 4.9)
	초과급여	268 ( 9.6)	286 ( 6.7)	282 ( 9.2)	275 ( 3.2)	273 (-3.4)	242 (-11.8)
	특별급여	1,245 (18.7)	1,146 ( -8.0)	1,112 ( -4.4)	1,397 ( 30.9)	1,096 (-1.4)	968 (-30.7)
	비상용임금총액	1,025 (-0.3)	1,208 ( 17.8)	1,230 ( 14.4)	1,493 ( 23.3)	1,228 (-0.1)	1,431 ( -4.1)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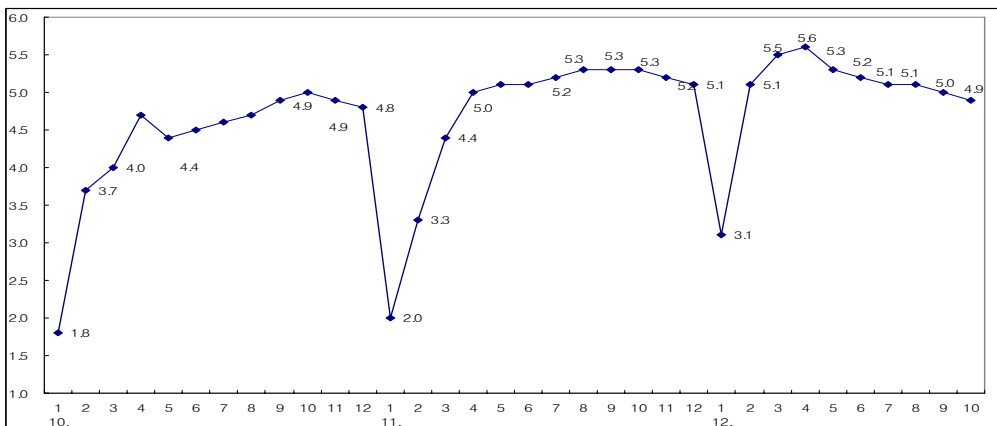
◆ 2012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 4.9%

○ 2012년 10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9%로 2011년 10월 인상률(5.3%)에 비해 0.4%p 하락함.

— 2012년 8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1년 8월 인상률(5.3%)에 비해 0.2%p 하락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8월 근로시간 0.9% 감소

- 2012년 8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함.
  - 2012년 8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4.6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6.1시간)에 비해 1.5시간(0.9%) 감소함.
- 2012년 1~8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2012년 1~8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5.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5.7시간)에 비해 0.6시간(0.3%) 감소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0	2011	2012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8월
전체 근로시간	176.7( 0.3)	176.3( -0.2)	175.7( -0.2)	176.1( 1.1)	175.1(-0.3)	174.6( -0.9)
상용총근로시간	184.7( 0.2)	182.1( -1.4)	181.2( -1.4)	181.1( -0.3)	180.6(-0.3)	179.3( -1.0)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3(-0.6)	168.5( 0.1)	167.8( 0.2)	167.1( 1.0)	167.8( 0.0)	167.7( 0.4)
상용초과근로시간	16.4( 8.6)	13.6(-17.1)	13.5(-17.2)	14.0(-13.6)	12.9(-4.4)	11.6(-17.1)
비상용근로시간	115.4(-3.3)	122.5( 6.2)	122.7( 4.8)	129.4( 10.7)	122.1(-0.5)	128.7( -0.5)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8월 제조업, 운수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8월 제조업, 운수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8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2012년 8월 제조업(180.5시간, -3.6%), 운수업(183.4시간, -2.1%)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193.3, 3.0%), 사업서비스업(177.8시간, 2.4%), 숙박 및 음식점업(189.1시간, 2.2%) 등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8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3.3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6.2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2년 1~8월 누계 근로시간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함.
  - 2012년 1~8월 누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제조업(186.9시간, -1.7%), 건설업(152.2시간, -1.4%)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사업서비스업(174.1시간, 2.6%), 운수업(182.6시간, 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5.5, 1.8%) 등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0	2011	2012		1~8월 누계	8월
			1~8월 누계	8월		
전 산업	176.7( 0.3)	176.3(-0.2)	175.7(-0.2)	176.1( 1.1)	175.1(-0.3)	174.6(-0.9)
광업	188.1( 0.3)	186.9(-0.6)	186.6(-0.2)	188.7( 0.4)	186.6( 0.0)	188.0(-0.4)
제조업	192.1( 1.9)	190.6(-0.8)	190.1(-0.5)	187.2( 1.1)	186.9(-1.7)	180.5(-3.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 0.1)	176.0(-0.1)	175.9( 0.1)	176.4( 0.2)	178.4( 1.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5.8(-3.5)	188.8(-1.9)	185.7(-0.1)	185.6(-1.7)
건설업	146.1(-0.7)	153.9( 5.3)	154.4( 5.5)	155.4(10.1)	152.2(-1.4)	156.2( 0.5)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4.3(-1.4)	174.2(-0.6)	174.8( 0.3)	175.6( 0.8)
운수업	184.6( 0.1)	181.6(-1.6)	179.9(-2.3)	187.3( 1.1)	182.6( 1.5)	183.4(-2.1)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6.5(14.6)	185.1(11.4)	188.6( 1.1)	189.1( 2.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3.8(-1.1)	165.0( 0.1)	164.9( 0.7)	168.9( 2.4)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62.4(-1.3)	166.3( 0.7)	164.2( 1.1)	166.4( 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2.9(-3.4)	187.6(-4.2)	195.0( 1.1)	193.3( 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4.9(-0.4)	165.6(-0.4)	166.2( 0.8)	168.1( 1.5)
사업서비스업	180.1( 0.6)	172.1(-4.4)	169.7(-5.0)	173.7(-4.0)	174.1( 2.6)	177.8( 2.4)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 2.0)	152.5( 2.3)	157.6( 4.9)	153.0( 0.3)	158.0(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 0.1)	173.5(-1.7)	172.4(-1.8)	175.1(-1.1)	175.5( 1.8)	178.4( 1.9)
여가관련 서비스업	158.7(-1.8)	157.1(-1.0)	157.3(-1.0)	162.9( 1.1)	158.0( 0.4)	160.9(-1.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4.7( 0.3)	173.1( 0.2)	170.1(-2.6)	170.9(-1.3)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2년 8월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8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모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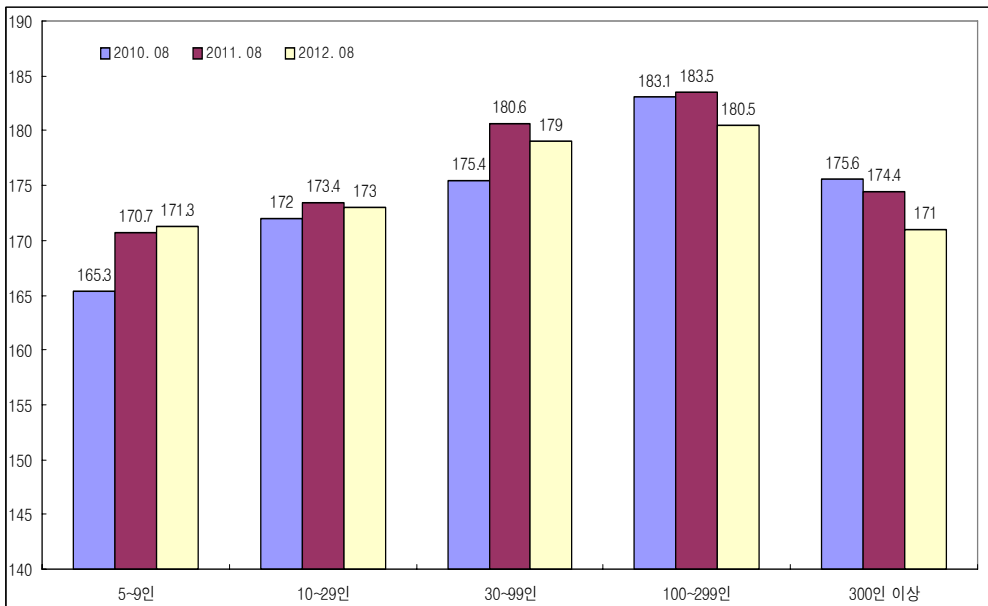
- 상용근로자 10~2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3.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9.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0.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함(그림 10 참조).
- 반면 5~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한편 2012년 1~8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은 5~9인, 10~2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3.0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1%, 10~29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2.4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1%,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5% 감소함.
  -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9.7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4%,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0.5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2% 증가함.

[그림 10]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가계수지 동향

### ◆ 2012년 3/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2년 3/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7.8%), 재산소득(38.1%), 이전소득(3.8%)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실질로는 4.6%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5.9%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17.7%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통신(7.7%), 가정용품·가사서비스(6.3%), 주거·수도·광열(5.6%)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교육(-6.1%), 보건(-3.5%), 교통(-3.4%) 등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침(실질로는 0.7% 감소).

〈표 11〉 전국가구(2인 이상)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p)

	2011		2012			
	3/4분기		2/4분기		3/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897.6	6.5	3,942.3	6.2	4,141.9	6.3
경상소득	3,784.7	6.3	3,800.2	6.2	4,009.0	5.9
근로소득	2,573.6	6.2	2,566.7	7.5	2,775.4	7.8
사업소득	846.4	4.9	856.6	2.5	850.0	0.4
재산소득	14.8	20.8	21.2	32.1	20.5	38.1
이전소득	349.9	10.7	355.7	5.1	363.1	3.8
비경상소득	112.9	11.7	142.0	4.8	132.9	17.7
소비지출	2,443.6	5.8	2,386.1	3.6	2,467.1	1.0
비소비지출	746.3	7.4	723.5	3.2	791.8	6.1
처분가능소득	3,151.3	6.3	3,218.8	6.8	3,350.0	6.3
흑자액	707.7	7.7	832.7	17.5	882.9	24.8
흑자율	22.5	0.3p	25.9	2.3p	26.4	3.9p
평균 소비성향	77.5	-0.3p	74.1	-2.3p	73.6	-3.9p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2. 11), 『2012년 3/4분기 가계동향』.

- 비소비지출의 경우, 고용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인하여 경상조세(12.5%), 연금(8.2%), 사회보험(7.2%)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음. 특히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한 이자비용 지출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함.
- 2012년 3/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은 1분위 증가율(10.4%)이 5분위 증가율(7.7%)을 상회함.
-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3.8~9.6%)하였음.

〈표 12〉 2012년 3/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가구원수	257명		316명		341명		356명		366명	
가구주연령	57.5세		47.9세		46.7세		46.0세		47.4세	
소득	1,319.6	9.1	2,699.1	6.5	3,711.8	4.4	4,899.6	4.7	8,076.2	7.6
경상소득	1,241.0	8.5	2,635.6	6.7	3,646.2	4.7	4,814.5	5.0	7,704.4	6.5
근로소득	597.1	8.4	1,575.8	9.6	2,361.5	3.8	3,421.3	8.6	5,918.8	8.6
비경상소득	78.6	20.8	63.5	1.3	65.6	-8.7	85.1	-8.7	371.7	36.9
가계지출	1,503.0	1.7	2,366.4	-0.2	3,063.7	0.7	3,831.9	2.1	5,527.7	4.3
소비지출	1,237.9	1.2	1,915.3	-0.9	2,415.3	0.2	2,875.2	0.0	3,890.6	3.1
비소비지출	265.1	4.3	451.1	2.7	648.4	2.5	956.7	8.9	1,637.1	7.3
처분가능소득	1,054.5	10.4	2,248.0	7.3	3,063.4	4.9	3,942.9	3.7	6,439.1	7.7
흑자액	-183.4	31.6	332.7	105.8	648.1	27.0	1,067.7	15.3	2,548.4	15.5
흑자율	-17.4	10.7p	14.8	7.1p	21.2	3.7p	27.1	2.7p	39.6	2.7p
평균소비성향	117.4	-10.7p	85.2	-7.1p	78.8	-3.7p	72.9	-2.7p	60.4	-2.7p

주·자료: <표 11>과 동일.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공공부문 파업 현황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 5개 공공부문 연맹과 연대단위,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참석함.
  -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철회, △대정부 교섭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노정교섭의 제도적 틀 마련 등을 요구함.
  -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이 무력화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등 잘못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이번 총파업 집회에 엄정 대처해 법과 원칙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각 공단은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
- 총궐기 투쟁과 함께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 관련 3개 공단의 6개 노조는 10월 3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음.
  - 이들은 사회보험 개혁 방안으로 △의료민영화 중단, △사회보험 국고지원 및 서비스 확대,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직영병원 설립 등을 요구함. 이 밖에 임단협 요구사안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년연장, △공무원과의 임금차액 2.6% 보전, △사내복지기금 설치, △신규인력 충원 등이 있음.
  - 노조 관계자는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와 공공부문에 관한 잘못된 정책기조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관련부처의 노력과 국회 및 여야 정치권에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특별한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개혁과 같은 노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된 요

구사안으로 내걸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들의 집회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자제를 당부함.

- 경영계는 “이번 파업은 노동계에 편향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려는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또한 10월 31일 총파업을 단행함.

- 이날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2,500명 중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1,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알려짐.
- 이들의 요구사안은 △실질임금 인상 및 복지기금 쟁취, △노정 직접교섭권 쟁취, △LNG 직수입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반대, △가스공공성 정책 수호임.
- 노조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민영화로도 『도시가스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경쟁도입이라는 단어로도 통과를 못했다”며 “이제는 시행령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단행함.

- 민주노총 산하 3개 비정규직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9일 1차 총파업을 단행함.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공립 초·중·고 9,647개교 중 2,021개교, 전국 1만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됨.
  - 이들은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교육감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정년보장을 요구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고 근속기간이 길어도 급여에 차이가 없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3일 충청북도 지역 파업을 포함한 총궐기 투쟁을 벌임.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북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이 노동위원회 명령에도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성실교섭과 대화 등을 요구함. 또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집중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위해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파업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처사인가”라고 반박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한편 이에 앞서 21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학

내 효율적 인력관리 등을 위해 유사업무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호봉제 시행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주체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임.
  -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파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전달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비롯한 고용관계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잠시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심화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등 버스 노사는 11월 22일 전국 시내·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한 후, 오전 7시 전후로 전국의 버스운행을 재개함.
  - 이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법안처리 유보를 공식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라며 “그러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와 택시지부는 이번 버스파업에 대해 버스·택시 사업자 간 이전투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 이에 국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부가 내년 예산안 처리 때까지 택시업계 처우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결정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 달 7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버스업계 또한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안이 통과할 경우 재파업한다는 방침임. 한 연합회 관계자는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부·택시 업계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함.
- 이에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과잉 해소와 요금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대해 한 관련 전문가는 “중앙과 지방정부에 택시문제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공동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 현대자동차 노사, 사내하청 특별교섭 재개

○ 현대자동차 노사는 11월 8일 특별교섭을 재개함.

- 특별교섭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사내하청 대표, 금속노조 등 5자 협상 형태로 진행됨.
- 회사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하청노조의 철탑농성,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규모,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 받은 최병승씨 관련 사안, △해고자 하도급업체 재입사 등을 일괄 타결할 것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비정규직 노조 측은 △회사 측의 신규채용 중단 및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비정규직에 대한 고소·고발·징계 철회,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6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함.
- 정규직 노조 측은 △대법원 승소자 최병승씨 정규직 전환, △울산·아산·전주 지회 조합원을 우선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법파견 투쟁 해고자 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3대 방향’을 교섭의제로 제시함.

○ 현대자동차는 11월 22일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힘.

- 최병승씨는 전 사내하청 직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회사 측은 “사내하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최병승씨 1인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 직원의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측은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반면 정규직 노조 측은 “회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임.
-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가 일부 공정에서 불법파견 노동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11월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 중에서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함.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불법파견 인정여부를 협상을 통해 풀어가기로 했다”면서 “노사 모두 동의하는 불법파견 공정을 추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함.
  - 이에 노조 관계자는 “만약 회사 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으려면 먼저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함.
- 불법파견 문제에 관해 현대자동차,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난항이 예상된다.
- 현대자동차 측은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이 제시한 불법파견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하청근로자만 불법파견으로 볼 것”이라고 말함.
  - 반면 비정규직 노조 측은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하청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는지 여부를 불법파견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생산공정 전체, 총 7,700여명 생산직 하청근로자가 모두 정규직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에 정규직 노조 측은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으면 전문가를 포함해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또한 11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원의 송전탑 농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노 갈등의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전함.
- 한 노조원은 “대책 없는 투쟁을 비판한다”면서 회사 측이 단계적 정규직화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쌍용자동차 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 쌍용자동차 노동자 3명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함.



- 이들은 “9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인한 문제라고 밝혀졌는데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계획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함.
-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힘.
- 한편 이에 앞서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중에 병원으로 이송됨.

◆ **한진중공업, 지난해 해고된 정리해고자 재고용**

- 한진중공업은 11월 9일, 1년 9개월 전 정리해고된 현장근로자 92명을 재고용함.
  - 이는 지난해 노동·진보단체 등의 버스 시위, 공공크레인 농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회사 측은 당초 정리해고된 현장근로자 직원 94명 중 정년퇴임한 1명과 재취업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92명에 대해 기존 근무부서로 인사발령 조치를 냈다고 밝힘.
  - 이번 재고용과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복직은 했으나 일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직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전함.
- 이번 복직문제와 관련해 한진중공업 노사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알려짐.
  - 지난 10월 23일 회사 측은 재입사 서류 가운데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함. 이에 대해 복직자들은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문서로 첨부함.
  - 현재 한진중공업은 복직자를 포함해 현장직원 800여명 중 300여명만이 일하고 나머지는 유급휴직 상태임. 따라서 이번 복직자에 대해서도 무기한 휴업발령 조치가 내려짐.
  - 또한 회사 측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철회했지만 합의 당사자인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지 않음.

◆ **신세계 이마트, 노조 간부 해고를 둘러싼 논란**

- 11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간부 2명을 해고했다고 전해짐.

- 노조 관계자는 “무노조 신화를 깨고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조합원을 늘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이들의 해고는 회사 내규에 의해 절차적으로 진행되었고, 노조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회사 측은 “노조위원장 전 모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무단결근을 했고, 김 사무국장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해고했다”고 밝힘.
- 한편 노조 설립을 위해 신세계 이마트 정규직 3명은 지난 10월 25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29일 신고증을 받았음.

◆ **국회 환노위, MBC 청문회 개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12일 MBC 장기파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이날 청문회에는 MBC 노조의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함. 하지만 국회가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김재철 사장 등 MBC 관계자 전원 이 불출석하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여 논란이 되었음.
  - 야당 의원들은 이 날 청문회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김재철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MBC 오보 파동과 파업 종료 후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전보 조치 등에 관해 지적함.
- 이에 앞서 11월 8일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진행된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됨.
  - 이에 대해 MBC 노조는 “파업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진 않았지만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MBC 청문회 결과 등을 고려해서 파업재개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함.
  - 반면 회사 측은 “김 사장 해임안이 부결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밝힘.
  - 한 방송문화진흥회 관계자는 “노조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힘.
- 한편 11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지난 파업도중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업무복귀 직후 교육명령을 받은 1차 교육대상자 20명에 대해 인사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노조 측은 2명을 제외한 18명이 미래전략실, 서울경인지사, 용인드라마아개발단

등 본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었다며 반발하였고, 회사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법원, 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판결**

○ 법원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 법원은 “노조법상 회사에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계약을 맺어 일해 온 경우 등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들은 집단적으로 단결해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다”고 판결함.

– 따라서 법원은 전국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의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이 재능교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능교육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

– 이는 기존 판례와 다른 것으로, 2005년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조합원으로 하는 학습지 노조는 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번 판결에 관해 재판부는 이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1월 2일 타워크레인 설치시 지지방식을 개선하고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에 대한 방호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별관리물질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타워크레인 설치시 지지방식을 벽체지지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를 사용함으로써 붕괴 등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감전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사용사업주의 방호조

치 의무를 정비하고자 함.

- 현행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의에 있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원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유해물질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이밖에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7종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함. **KLI**

(박지은,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